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1. 1. 29.(금) / 총 3매(본문3) | |
| 국토교통부 | 공공주택 지원과 | 답 당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정수호, 사무관 서형우, 주무관 송정근 • ☎ (044) 201-4533, 4511 |
| 한국토지 주택공사 | 사회주택 사업단 | 답 당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장 박세영, 차장 유화영 • ☎ (031) 738-4557, 4558 |
| 보 도 일 시 | | 2021년 2월 1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·호텔 등 매입 착수

- 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
- 서울·인천·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2.1일~3.5일 접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'LH')는 도심 내 공실 상가·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.
- 리모델링 주택은 '민간 매입약정 방식'을 통해 시세의 50%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(공공 소유)하되,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(민간 건설), 이에 더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 - 이번 공모에서는 '지자체 연계형', '직능단체 연계형'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,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.
 - 신청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주체(사회적 기업, 비영리법인 등)와 주택임대관리업자(공유주택 운영 실적)로 한정하며,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.

□ 매입대상은 서울시·인천시·경기도(31개 시·군)에 위치한 최초 사용 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·제2종 근린생활시설, 업무시설, 숙박 시설 등(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)으로 대수선을 수반하여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.

○ 1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만큼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세대별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원룸형(세어형) 주택*으로 준공하여야 한다.

* 다세대, 연립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기숙사 등

○ LH는 ①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②동 전체를 활용하는, ③150호 이하인 ④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.

○ 반대로, ①다수가 구분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, ②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, ③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(압류, 경매 등)가 있는 경우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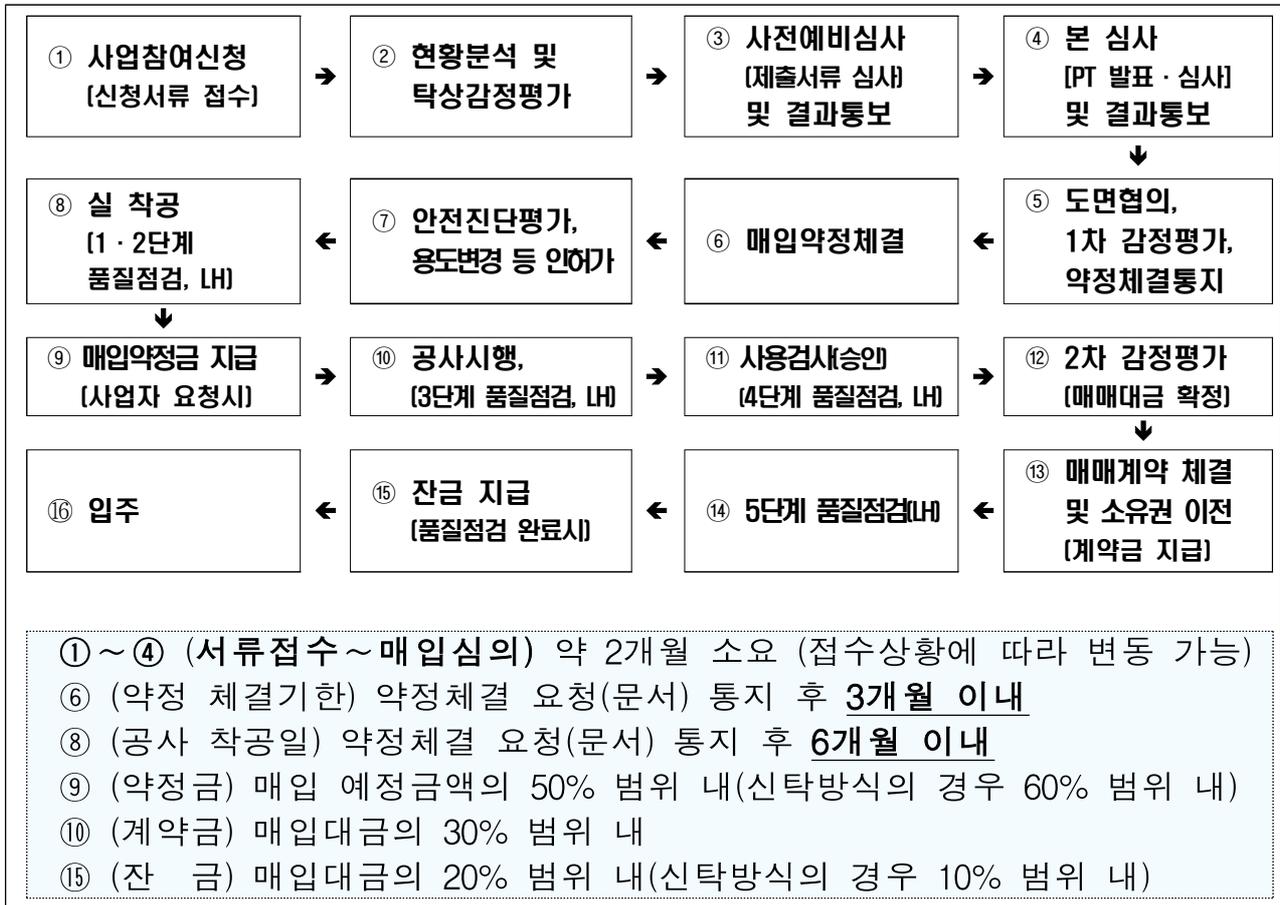
□ 사업절차는 서류접수(2.1~3.5) → 매입약정 체결 → 공사(5단계 품질 점검) → 준공 → LH 매입 → 입주 順으로 이루어진다.

○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'매입심사위원회'의 심사(사전예비심사·본심사)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 한다.

○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·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,

-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%(신탁방식의 경우 60%)를 지급하고,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%,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%(신탁방식의 경우 10%)를 지급한다.

< 사업 추진 절차 >



□ 신청방법은 LH 사회주택 사업단*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고,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5일(33일)까지이다.

*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(LH 경기지역본부 6층), ☎ (031) 738-4557 ~ 4558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(<https://apply.lh.or.kr>)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‘공공주택특별법’ 개정을 추진하겠다”며,

○ “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| |
|--|---|
|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(☎ 044-201-4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|---|